

Daelim PP UE332K

블록 코폴리머



제품 설명

Daelim PP UE332K는 **Lyondellbasell**사가 개발한 **Spheripol** 공법으로 울산피피에서 생산한 고결정성 폴리프로필렌 블록 코폴리머입니다. 이 제품은 완구, 운반용상자, 생활용품 등의 사출성형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Daelim PP UE332K**는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의 식품포장 규격인 **21 CFR 177.1520** 규정을 만족하며 **UL94HB**의 난연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성	강성과 인성의 균형잡힌 물성/ 우수한 저온 충격강도/ 적은 휨 발생 /
UL94HB 사양	Consumer Products, Industrial & Pipe
주요용도	완구/ 운반용상자/ 생활용품

ASTM Data			
물성	측정치	단위	측정방법
용융지수 (230°C, 2.16kg)	5	g/10 min	ASTM D1238L
밀도	0.9	g/cm3	ASTM D1505
굴곡탄성률	11500	kg/cm2	ASTM D790
인장강도(항복점)	250	kg/cm2	ASTM D638
신율(항복점)	9	%	ASTM D638
아이조드 충격강도 (23°C)	15	kgfcm/cm	ASTM D256
아이조드 충격강도 (-20°C)	7	kgfcm/cm	ASTM D256
록웰경도 (R-Scale)	95	R-Scale	ASTM D785
연화점	150	°C	ASTM D1525
열변형온도 (0.46 N/mm²)	88	°C	ASTM D648

1) 위의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제품 사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2) 울산피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사용 설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동 제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제한 사항 및 사용 설명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제품을 특정 범주의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각각의 특정 용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시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일체의 손해 또는 손해는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이며,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3)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울산피피는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판매적합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일체의 보증 포함)도 하지 않습니다.

4) 본 제품(들)의 사용은 아래의 경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i.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3**,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4** 및/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3** 의료 기기;
- ii. 영구적 체내 이식을 수반하는 용도;
- iii.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적 용도; 또는
- iv. 납, 석면 또는 메틸삼차부틸에테르 (MTBE) 관련 적용

사용자는 본 제품을 위 범주에 사용함에 따른 일체의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5)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각각의 구체적 사용 방식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 범주에서 본 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판매자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동 제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i.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1**,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1** 및/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1** 의료 기기;
- ii.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2**,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2** 혹은 클래스 **3** 및/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2** 의료 기기;
- iii. 전술한 의료 기기 중 하나의 일부 또는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필름, 겔 포장 및/또는 제품 포장재;
- iv. 활성 제약성분에 직접 닿는 포장재 및/또는 흡입, 주사, 정맥·코·안과적(눈)·소화기 혹은 국소(피부) 투여를 위한 조제 형태;
- v. 담배 관련 제품 및 사용;
- vi. 전자 담배 및 유사 기기; 또는
- vii. 원자로의 일부 또는 부품으로 간주되는 압력 파이프 또는 설비

※미국 식품의약품국, 캐나다 연방보건부와 유럽연합 규정에 대해 언급된 모든 내용은 그에 준하는 다른 나라의 규제 분류를 포함합니다.

6) 본건 책임부인고지문의 목적상 "판매자"는 울산피피 및 울산피피가 본 고지문이 적용되는 제품 판매를 위해 선임한 자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Trademarks

제품명에 언급된 상표는 DL 홀딩스가 소유하고 사용하며, 울산피피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입니다.